

계약조건(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영남대학교의료원 시스템 냉난방기(EHP) 및 천장형 F.C.U 종합세척 작업

2. 공사개요

가.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나. 내 용

- 1) 시스템 냉난방기(EHP) 663대 종합세척
- 2) 천장형 F.C.U 541대 종합세척

3. 공사범위

가. 용어의 정리 : 영남대학교의료원은 “발주처, 발주자, 의료원, 갑, 감독관” 등으로 칭하며 낙찰된 주관 계약사는 “계약사, 원도급자, 도급자, 계약자, 시공사, 을” 등으로 칭한다. 이하 계약조건(현장)설명서는 모든 범위에 적용된다.

나. 일반사항

- 1)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본 공사의 공사내역 작성 및 시공 기준은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면, 관계법의 유권해석, 감독관 지시사항 등의 순으로 한다.
- 3) 입찰자는 현장설명 시 시방, 도면, 현장설명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 조사하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조사할 책임이 있으며, 입찰자는 현장설명서의 모든 사항의 정확성을 인지하고 작성된 것으로 한다.
- 4) 입찰자는 견적에 영향을 미칠 제반 여건 또는 공사 수행 및 완공에 필요한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수단 공사장에 인접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계약 후 공사의 수행과 완공에 영향을 미칠 위험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 5) 입찰참가 예정자의 요청 시 내역의 품목 및 규격, 수량은 제공할 수 있지만 입찰시 참고용으로 하며, 반드시 시방서, 현장설명서, 도면 및 현장을 확인하여 물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제공된 공내역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등에 기재된 사항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사가 제출한 공사내역서상의 품목 및 규격, 수량 등에 대하여 누락, 수량 부족 등 기타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사가 책임 시공하며, 일체의 공

사비 증가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 6) 입찰 참가 예정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문사항 발생 시 사전 발주처에 현장 설명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한다.(지정기간 경과 이후에 설계도서의 오류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7) 계약조건(현장) 설명서는 공사계약 시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되며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8) 입찰내역 작성 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관련 입찰 도서에 기록된 사항은 전부 내역 산출에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9) 입찰 참가 예정자는 도면 및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각종 기자재에 대한 제작사를 면밀히 확인하여 산출 내역서에 반영하며, 계약자의 실수로 인한 기자재 적용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으며, 기자재 적용의 오류 발생 시 계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기자재를 변경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 10) 현장 상주 인원은 의료원에서 지정한 인원(현장대리인 외 1인)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고 공사 중 시공 기술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목적물의 품질 관리 및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도급자에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즉시 이에 따른다.(단,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11) 시스템 냉난방기(EHP) 및 천장형 F.C.U 종합세척과 병원 운영을 동시에 병행 실행함으로써 설계도서에 제공된 위치와 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조사 후 입찰에 참가하며 계약자는 공사에 따른 가설계획이 포함된 상세한 시공 계획서를 착공 전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시공한다.
- 12) 계약자는 병원 관계자와 분쟁이 없도록 시공하고 상호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책임지고 조속히 처리한다.
- 13) 계약자는 시공에 따른 병원 이용객 및 환자, 교·직원의 기존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기존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분쟁,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부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책임지고 조속히 처리한다.
- 14) 계약자는 공사 차량(자재반입·반출, 폐기물 처리 등)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제 요원 배치 및 자재 적재 가설 울타리 및 보양 등을 계획하고 내역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 15) 민원 발생 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계약자가 주관하여 적극 민원을 해결하며, 민원 해결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조치한다.
- 16) 지체상금률은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 요청 지연일수를 제외한 지체일수 당 발주처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17)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관련법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주처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 18) 계약자는 계약(도급)내역을 공정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 19) 공사 중 민원 발생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발주처에 민원 내용을 구두 보고하며, 발주처의 공사 재개 지시받은 후 후속 공사 진행한다.
- 20) 공사 관련 모든 차량은 발주처가 정한 주차료를 주차관리소에 납부한다.
- 21) 계약자는 내부 공사 필요 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부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공사한다.
- 22)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 대상이며, 준공 정산 시 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 부족에 따른 금액은 발주처에서 차감 후 정산 지급한다.
 - 가) 정산 기준금액은 관련법에 의거 공사비 비율로 하며, 계약자는 발주처에 기준금액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요구에 따른 책임은 낙찰받은 계약자에 있다.
 - 나) 공사 계약조건의 제출 증빙자료는 발주처에서 위 공사명을 별도 명기하여 영남대학교의료원 공사임을 관련 부서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한다.
- 23) 필요에 따라 평일 야간, 주말을 이용하여 시스템 냉난방기(EHP) 및 천장형 F.C.U 중합세척을 진행할 수 있다.
- 24)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크리닝, 냉난방기종합세척업 등 시스템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 교육 이수)을 보유한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한 업체로 한다.
- 25)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의료시설 또는 공공기관(교육연구시설 포함) 시스템 냉난방기(EHP) 종합세척 수행한 실적금액이 1,500만원 이상 수행한 실적(단일건 기준)을 보유한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다. 공통 시방

- 1)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정밀 시공한다.
- 2) 계약자는 공사로 인하여 영남대학교의료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시스템 냉난방기(EHP) 및 천장형 F.C.U 중합세척은 현장 주변 방문객, 직원 등의 통행이 빈번함으로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이용객의 통행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 및 이용객의 통행로를 확보한 후 공사하며, 안전시설,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 3) 영남대학교의료원 내, 외부 이용객의 이동통로를 위한 안전 및 분진 시설물 설치에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계약자 부담으로 안전 및 분진 누출이 없는 가설물을 설치한다.

- 4) 기존 시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조치한다.(소요비용 : 계약자 부담 책임 시공)
- 가) 기존 관련실의 운영 및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병원 관련 부서의 요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 단계별 분리 시공한다.
- 나)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 및 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기, 비품 등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다)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 손괴 또는 훼손 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 복구한다.
- 5) 착공 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6) 공사 중 이용객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련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며, 공사에 따른 제반 조치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자재반입 및 공사 차량의 통행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파손이 없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 파손 시 계약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한다.
- 8) 계약자는 공사용 전기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하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9) 사용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견본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10)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각종 시험 항목과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외부공인 기관에 의뢰, 시험에 합격 받아야 한다.
- 11) 시험 결과 불합격품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기간 내에 보완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한다.
- 12) 계약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도서(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면밀히 검토하며, 도면상 오기, 누락 등 발생 시 이를 포함하여 조치한다. (단, 도면상 누락분 발생 시 계약자는 시공을 감안하여 필요부 보완 보강을 포함토록 하며, 이에 수반되는 공사비 및 소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13) 설계에 반영된 자재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14)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품 및 재료는 KS인증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15)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의 시험은 시방서 규정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하며 의료원 요청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항 일체는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17) 계약자는 본 공사의 준공을 받고 실제 공사 완료 후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때

준공도서(도면, 계산서 외 발주처가 정한 서류), 공정별 유지관리 지침서, 허가 필증이 준공계와 함께 발주처에 접수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한다.(준공도서 항목 및 수량은 별도로 지정한다.)

- 18) 계약자는 각 공사의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대지(전, 중, 후)를 별도로 만들어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제출한다.
- 19) 현장설명 시 제공되는 모든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 중, 계약조건 설명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 질의 기간 내에 발주처에 문의한다.
- 20) 공통 가설 전기공사는 공통 가설공사에 포함한다.
- 21) 입찰 내역 작성 시 모든 공종은 시공 범위 및 사양에 대한 시설 기준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 22)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냉난방기(EHP) 및 천장형 F.C.U 종합세척임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료원 지시에 의한 공사 구분은 명확히 수행토록 하며, 공사에 따른 모든 자재는 의료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정 진행토록 한다.(안전조치 및 단계별 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라. 하도급 승인

- 1) 하도급 범위 및 사용 자재의 비율 등은 관련법에 준용하여 적용한다.
- 2) 계약자는 단종업자 또는 부분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는 하도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사전(착공 1주일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3) 계약자는 타 업체에 일괄 재하도급 할 수 없으며, 협력사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단, 신공법 및 관련법에 따른 특수사항은 제외함)

마. 안전관리

- 1) 공사 전 투입 인원에 대해서는 작업 투입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2) 안전기준에 위반된 안전시설 부적격 안전 장구 및 안전 수칙을 위반한 작업자 적발 시 즉시 현장 출입을 금지한다.
- 3) 착공 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준공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4)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공사현장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관리, 감독한다.
- 5)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료원 이용객, 교직원 의료원 통과 차량 및 인원)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진다.
- 6) 공사개요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의료원에서 정한 재질 및 규격 내용 등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바. 기타사항

- 1) 현장설명서에 누락된 사항은 공사 일반 시방 및 통상 관례에 준용한다.
- 2) 교통소통 및 이용객 불편 해소는 영남대학교의료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선 조치 후 진행한다.
- 3) 현장 내 통신은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연락을 금지한다.
- 4) 분진 및 폐기물이 외부 누출 없도록 적법하게 선 조치 후 진행한다.
- 5) 계약자는 지정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하며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발주처의 공사 중지 지시가 있을 때 즉시 공사를 중단한다. 공사기간 내 미시공으로 인한 진료 차질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설계변경

- 1)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 부담하며, 이외 설계변경 발생 시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 시 공 10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2)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선 시공분은 지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시 내용, 지시 도서(변경전, 후 도면, 공사비 증감내역)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발주처의 승인 없는 설계변경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의 지시로 설계변경 시공한 경우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 제출한다.
 - (가) 설계변경 내용(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명기 포함)
 - (나) 설계변경 도면
 - (다) 공사비 증감 내역서
- 4) 설계변경 단가 산정 기준
 - (가)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을 준용한다.
 - (나) 신규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액 이하로 발주처와 시공사의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상호 이견 발생 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합의한다. 자문기관 선정은 발주처에서 2개소 이상, 시공사에서 2개소 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며, 자문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 5) 계약자는 공사가 직팽식 공조기 냉동기 세관 및 정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계법령을 사전에 검토하여 준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주처로부터 관련법 및 시공에 따른 서류 요구 시 즉시 제출하며, 자료 불충분 및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6) 도면, 시방, 현장설명 시 누락된 부분이라도 공사 시공에 필요한 부분은 발주처 지시

로 계약자가 선 시공한다. 선 시공분은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기사항

가. 기계공사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부대조건은 전반적인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그 시행규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 종류 : 시스템 냉난방기(EHP) 및 천장형 F.C.U 종합세척

다) 본 공사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와 발주처의 서면 및 구두지시에 의거 시공하되 도면 및 시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압가스, 소음방진 배출 등에 요구되는 부분과 SYSTEM 설계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특히 제품 검수시의 부실이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재시공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계약자는 시스템 및 장비성능(장비에 대한 TEST는 공급업체와 함께한다.) 시운전 일체를 시행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공사와 연관된 장비, 자재, 준공 청소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기계설비공사 관련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시한 것이므로 수급자(하도급자)는 계약전 및 시공전에 기계설비 등의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으나 기능상 필요한 사항들은 본 공사비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계설비의 운전, 기능 및 기타 시설물에 아무 영향과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의문점, 미비점, 문제점, 불명료한 사항 등의 발견 시는 필히 시공 전에 발주처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바) 설계에 누락 등이 있을 경우 기계설비 설계도서와 관련법규, 조례 등을 검토, 확인, 조사한 후 도면 및 시방서등에 표기 후 발주처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사) 본 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시방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시공되는 모든 자재는 구매 전에 발주처의 승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최상품으로 사용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급자재 및 장비를 상차도 상태에서 인수하여 현장 내에서의 소운반 및 설치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및 파손 또는 시공 불량에 의한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발주처에서 요구 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견본품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납품하며 발주처에서 견본품을 2개 (SET)이상 요청할 경우에도 시공사의 부담으로 하되 견본품 제출이 불가능한 품목 및 KS 제품이나 형식승인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CATALOG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사항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자의 주요자재 및 장비류는 당사의 공정계획에 의거하여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주 및 반입 시기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여타 이유로 불이행시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계약서를 기준으로 감액 조치한다.

(6) 계약자는 주요자재 및 장비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별도로 일정 기간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주요자재의 재질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방서에 준한다.

자)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본 공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 중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지시사항을 발주처의 요청기일까지 조치, 완료하되 사전에 문서 등으로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하여 비용 등이 수반되는 것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계약자는 공사 관련 다음 사항들을 현장 담당자 혹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준수한다.

(1) 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발주처에 설치 상세도면과 견본 또는 모형품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모두 제출하되 발주처에서 이 중에서 양호한 것으로 선택 결정하여 작업 지시가 되더라도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 조치한다.

차) 본 계약의 공사범위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 (1) 작업지역 청소 및 작업 시 필요한 비계발판 설치, 해체 및 정리
- (2)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공사진 촬영 및 서류작성
- (3) 용접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공정 작업 시 근처 소화기 배치
- (4) 지급자재에 연관된 후속작업 및 관련자재, 비용을 포함한다.

2) 종합세척 범위(전체 1,204대)

구 분	본관 냉난방기(실내기)					소계	본관 F.C.U			소계	합계
	4way	2way	1way	스탠드형	벽걸이형		4way	2way	1way		
수 량	127	16	54	19	8	223	60	1	9	70	293

구 분	서관 냉난방기(실내기)				소계	서관 F.C.U			소계	합계
	4way	2way	1way	스탠드형		4way	2way	1way		
수 량	96	44	69	9	218	167	22	8	197	415

구 분	호흡기센터 냉난방기(실내기)					소계	호흡기센터 F.C.U			소계	합계
	4way	1way	원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4way	2way	1way		
수 량	99	42	3	9	4	157	268	4	2	274	431

구 분	영의관 냉난방기(실내기)				소계	장례식장 냉난방기(실내기)		소계	사무처 냉난방기(실내기)		소계	합계
	4way	2way	1way	스탠드형		4way	스탠드형		4way	1way		
수 량	14	2	16	4	36	3	8	11	15	3	18	65

가) 시공되는 모든 자재는 구매 전에 발주처의 승인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최상품으로 사용한다.